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5
----------	------

제출년월일 : 2013. 4.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충주시 향토음식의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향토음식의 육성·발전을 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신설(안 제2조)

- 관광 상품화, 상표

나. 향토음식위원회 심의 사항 조정(안 제3조)

- 향토음식 가격 심사와 조정(삭제)
-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신설)
- 향토음식 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신설)

다. 당연직 위원 규정(안 제4조)

- 부시장, 기술센터소장, 기술연수과장, 보건위생과장

라. 향토음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

마. 향토음식 표준화·상품화를 위한 추진 사항 규정(안 제13조)

- 요리법 표준화, 조리백서 발간, 홍보자료 제작 등
-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상표·서비스표 출원·등록, 사용 범위 · 금지 사항 규정 (안 제14조~안제16조)

사. 향토음식 보급·전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불임

다. 합의 : 완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3. 3. 15. ~ 4. 4.)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완료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조례”를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 보전 · 보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발굴 · 육성 · 보전하기”를 “발굴 · 육성 · 보전 · 보급하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음식”이라 함은”을 “향토음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향토음식점”이라 함은”을 “향토음식점”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 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 · 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제조 · 가공업체, 대학 연구
기관, 그 밖의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발굴 · 육성 · 보전 관리”를 “발굴 · 육성 · 보전 · 보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향토음식 상표 · 서비스표의 출원 · 등록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연수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식품·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향토음식·외식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
4. 요리전문가,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등 향토음식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과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향토 음식은”을 “음식을”로, “거쳐”를 “거쳐 향토음식으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을 “신청에 따라”로, “거쳐”를 “거쳐 향토음식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정되는 품목”을 “인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음식과 관련한”으로, “사항”을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3.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4. 향토음식 기술이전과 보급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보고감독 등)”을 “(향토음식의 표준화 · 상품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 · 육성 · 보전 ·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5. 향토음식 특허, 상표 등록 등 소유권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 · 전문 기관 ·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명칭 사용의 금지)”를 “(상표 · 서비스표의 출원 ·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발굴된 향토음식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 · 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 모집하거나 전문업체 용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 ·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
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 · 협약된 식품제조 · 가공업소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3. 향토음식 원료의 생산 · 가공 지정 · 협약 농업경영체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제16조(상표 등의 사용금지) 시로부터 향토음식 보급 업소 또는 향토

음식업소(식품제조·가공 생산업체 등)로 인정받지 못한 업소 등은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향토음식 보급·전수 교육) 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정기·보급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 중 “시행에 관해”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주시 향토음식</u></p> <p style="text-align: center;"><u>발굴·육성 및 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u>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u>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향토음식</u>”이라 함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이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u>향토음식점</u>”이라 함은 충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충주시 향토음식</u></p> <p style="text-align: center;"><u>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u></p> <p>제1조(목적) ----- ----- ----- <u>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u> -----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향토음식</u>”이란 ----- ----- ----- ----- -----. 2. “<u>향토음식점</u>”이란 ----- ----- -----. 3. “<u>관광 상품화</u>”란 향토음식을 제조·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4. “<u>상표</u>”란 다른 업체와 구별 되도록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현 행	개 정 안
	<u>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u>
<p>제3조(향토음식위원회) ① 향토 음식의 <u>발굴 · 육성 · 보전 관리</u>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 략)</p> <p>3. <u>향토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u></p> <p><신 설></p> <p>4. (생 략)</p> <p><신 설></p> <p>5.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p>	<p>제3조(향토음식위원회) ① ----- ----- <u>발굴 · 육성 · 보전 · 보급</u> ----- ----- -----.</p> <p>②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u>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u></p> <p>3. (현행 제4호와 같음)</p> <p>5. <u>향토음식 상표 · 서비스표의 출원 · 등록에 관한 사항</u></p> <p>6. 그 밖에 ----- -----</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u>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 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 ----- ----- <u>1명</u>을 포함한 <u>15명</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p>

현 행	개 정 안
<p>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충주시의원, 식품 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 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 가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충주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 터소장, 기술연수과장, 보건위생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회 의원 2. 식품·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향토음식·외식업 관련 민간 단체의 장 4. 요리전문가,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등 향토 음식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직무) ① (생략)	제6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u>1인</u>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담당 주사가 된다.</p>	<p>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p> <p>③ ----- ----- <u>1명</u>----- -----.</p>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제8조(수당과 여비 등) -----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u>범위</u> ----- ----- 그 밖의 -----

현 행	개 정 안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생 략) ② 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발굴된 새로운 <u>향토음식</u> 은 위원 회의 심의를 <u>거쳐</u> 지정한다.	제9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1항에 따라</u> ----- ----- <u>음식을</u> ----- ----- <u>거쳐 향토음식으로</u> ---.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u> 위원 회의 심의를 <u>거쳐</u> 지정한다. ③ 시장은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u> <u>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u> <u>대하여</u>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신청에</u> <u>따라</u> ----- <u>거쳐</u> <u>향토음식점을</u> -----. ③ ----- <u>제2항에 따라 지정된</u> <u>향토음식점에</u> ----- ----- -----. -----.
제11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u> <u>경우에는</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u>인정되는 품목</u> 2. 기타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정의 취소) ----- ----- <u>해당하면</u> ----- -----. 1. ----- ----- <u>인정할 때</u> 2. 그 밖의 취소사유가 발생 했을 때
제12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u>향토</u> <u>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u>	제12조(육성지원 등) --- <u>예산의</u> <u>범위에서 향토음식과 관련한</u> -

현 행	개 정 안
<p>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 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6. 기타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p>제13조(보고감독 등) ①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p>	<p>-----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단체 등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3.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4. 향토음식 기술이전과 보급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 · 보전·보급에 관한 사항 <p><삭 제></p> <p>제13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육성 · 보전·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5. 향토음식 특허, 상표 등록 등 소유권 확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

현 행	개 정 안
<p>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뢰할 수 있다.</p>
<p>제14조(명칭 사용의 금지) 향토 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임을 나타내는 표시를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제14조(상표·서비스표의 출원·등록) ① 시장은 발굴된 향토 음식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상표 등은 공개 모집하거나 전문업체 용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신 설></p>	<p>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5조(상표 등의 사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 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협약된 식품제조·가공업소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3. 향토음식 원료의 생산·가공 지정·협약 농업경영체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해</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신 설></u></p>	<p><u>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u></p> <p><u>제18조(시행규칙)</u> ----- <u>시행에</u> ----- -----.</p>
<p><u><신 설></u></p>	<p><u>제16조(상표 등의 사용금지)</u> 시로부터 향토음식 보급 업소 또는 향토음식업소(식품제조·가공생산업체 등)로 인정받지 못한 업소 등은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p> <p><u>제17조(향토음식 보급·전수 교육)</u></p> <p>① <u>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정기·보급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과 관련 조문

- 의 안 명 :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련조문

제8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음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3.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4. 향토음식 기술이전과 보급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에 관한 사항

제13조(향토음식의 표준화·상품화)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육성·보전·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5. 향토음식 특허, 상표 등록 등 소유권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향토음식 보급·전수 교육) 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정기·보급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2. 비용추계 내용

가. 비용발생의 요인

- 향토음식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 향토음식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 지원
- 향토음식의 표준화 용역 및 상품화사업 추진
- 향토음식 보급·전수 교육

나. 추계의 전제

- 향토음식위원회 위원의 수당 : 4,200천원
- 향토음식과 관련한 기관·단체 등 지원 : 155,000천원
- 향토음식의 표준화 용역 및 상품화사업 추진 : 90,000천원
- 향토음식 보급·전수 교육 : 10,000천원

다. 추계의 결과

- 총 소요액 : 연간 259,200천원(시비)

라. 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단 가	수량	금 액	비 고
합 계			259,200	
보 조 금	계		155,000	
	향토음식 육성사업	50,000	3개소	150,000 향토음식 육성시범
향토음식 관련단체	5,000	1개소	5,000	향토음식 보급 단체
향토음식 홍보행사	행사비	70,000	1회	70,000 향토음식 홍보 등
향토음식 위원회	수당	1,050	4회	4,200 70천원×4회×15명
향토음식 보급교육	강사비 등	2,000	5회	10,000 2,000천원×5회
연 용 역	구 비	20,000	1식	20,000 표준화, 컨설팅 등

3.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조용민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74,200	259,200	259,200	259,200	259,200	1,111,000
보조금	-	155,000	155,000	155,000	155,000	620,000
향토음식 홍보행사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향토음식 위원회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향토음식 보급교육	-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연 구 용 역 비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	-	-	-	-
	보조금	-	-	-	-	-
	지방 교부세	-	-	-	-	-
자체	소 계	74,200	259,200	259,200	259,200	1,111,000
수입	자체 재원	74,200	259,200	259,200	259,200	1,111,000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호와 체질에 맞는 전통 식생활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 생산기술,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어업 경영기법, 농어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수산물 유통 기술, 농수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 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영어·양식기술, 전통 농법·어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 산업·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2조(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과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 시켜 세계화하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상표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 나.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다.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

2.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3의2. "지리적 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 3의3.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지리적 표시"라 함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을 동일 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 3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단체표장을 말한다.
4. "증명표장"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 4의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의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게 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5. "업무표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6. "등록상표"라 함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7.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 ② 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